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11.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등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결핵예방법」, 「약사법」, 「의료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인용조항 변경.
- 위임사무 일부 신설
 -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별표 제33호 가목)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안 별표 제35호 마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4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¹⁾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구청장이 부여받은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정비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2호, 제41호, 제42호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과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
 - 안 별표 제7호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 안전에 관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 면허,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업 등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제·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
 - 안 별표 제33호에 「결핵법」에서 구청장에게 지정된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신설.
 - 안 별표 제35호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청장에게 지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신설.
 - 안 별표 제43호에 「약사법」 개정으로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신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등 7개 사무(“가”~“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약사법」, 「의료법」 등의 법령 개정¹⁾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구의회

1) 안전상비의약품 : 일반의약품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품목)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8 호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핵예방법」, 「약사법」, 「의료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인용조항 변경.

나. 위임사무 일부 신설

-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별표 제33호 가목)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안 별표 제35호 마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45호)

3. 참고사항

가. 「결핵예방법」, 「약사법」, 「의료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따라
생략

-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나목 사무명 란 중 “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를 “소내 전보”로 하고, 라목 사무명 란 중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를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에”로 한다.

별표 제7호의 라목 근거법령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근거법령 란 중 “제100조”를 “제57조”로 한다.

별표 제11호 근거법령란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별표 제3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 아목을 나목에서 자목으로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가.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핵예방법」 제5조제3항	보건소장

별표 제3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0조	보건소장

별표 제41호 다목 근거법령란 중 “제59조 및 제62조”를 “제3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로 하고, 같은 호 차목 근거법령란 중 “제100조”를 “제57조”로 한다.

별표 제42호 나목 근거법령란 중 “제66조”를 “제64조”로 한다.

별표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4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업무개시 명령, 폐기명령 등) 라. 등록취소 마. 청문 바. 등록증의 갱신, 재교부 사.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임 사 무			【별표】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업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생 략)	(생 략)	구의회 사무국장	2.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의회 사무국장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u>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u>	(생 략)	보건소장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u>소내전보</u>	(현행과 같음)	보건소장
다.(생 략)	(생 략)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다.(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라. 구의회 소속 별정직, <u>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u> 대한 임용	(생 략)	구의회 사무국장	라. 구의회 소속 별정직, <u>임기제, 일반직공무원에</u> 대한 임용	(현행과 같음)	구의회 사무국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다. (생 략)	(생 략)	보건소장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건소장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변경·폐지신고 수리	같은법 제41조 및 <u>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u>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변경·폐지신고 수리	같은법 제41조 및 <u>「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u>	
마. (생 략)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허가증, 등록증의 갱신, 재교부	같은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u>제100조</u>		바. 허가증, 등록증의 갱신, 재교부	같은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u>제57조</u>	
사. (생 략)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 10.(생 략)			8. ~ 10.(현행과 같음)		
11. 안마시술소·접골소·침구 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81조,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u>제24조</u>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 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1. 안마시술소·접골소·침구 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81조,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u>제25조</u>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 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2. ~ 32.(생 략)			12. ~ 32.(현행과 같음)		
33.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u>< 신 설 ></u>		보건소장	33.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u>가.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u>	<u>「결핵예방법」 제5조제3항</u>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판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판
<p>가.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조사</p> <p>나. 결핵검진</p> <p>다. 결핵예방접종의 실시</p> <p>라. 업무종사자의 일시 제한 및 해제</p> <p>마. 입원명령</p> <p>바. 부양가족의 보호</p> <p>사. 결핵환자 등의 의료실시</p> <p>아.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p>	<p>「결핵예방법」 제10조</p> <p>같은법 제11조제2항</p> <p>같은법 제12조</p> <p>같은법 제13조 및 제14조</p> <p>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p> <p>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p> <p>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p> <p>같은법 제19조</p>		<p>수립 및 시행</p> <p>나.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조사</p> <p>다. 결핵검진</p> <p>라. 결핵예방접종의 실시</p> <p>마. 업무종사자의 일시 제한 및 해제</p> <p>바. 입원명령</p> <p>사. 부양가족의 보호</p> <p>아. 결핵환자 등의 의료실시</p> <p>자.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p>	<p>「결핵예방법」 제10조</p> <p>같은법 제11조제2항</p> <p>같은법 제12조</p> <p>같은법 제13조 및 제14조</p> <p>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p> <p>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p> <p>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p> <p>같은법 제19조</p>	
34.(생략)			34.(현행과 같음)		
35.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라. (생략) < 신설 >	(생략)	보건소장	35.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현행과 같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건소장
36. ~ 40.(생략)			36. ~ 40.(현행과 같음)		
4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나. (생략) 다. 의약품도매상 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 ~ 자. (생략)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카. ~ 타. (생략)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2조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 (생략)	보건소장	4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의약품도매상 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 ~ 자. (현행과 같음)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카. ~ 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현행과 같음)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현행과 같음)	보건소장
42.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생략) 나.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등 지도 감독	(생략) 같은법 제63조, 제66조	보건소장	42.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현행과 같음) 나.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등 지도 감독	(현행과 같음) 같은법 제63조, 제64조	보건소장
43. ~ 44.(생략)			43. ~ 44.(현행과 같음)		
< 신설 >			4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기관
			<p>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p> <p>나.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업무개시 명령, 폐기명령 등)</p> <p>라. 등록취소</p> <p>마. 청문</p> <p>바. 등록증의 갱신, 재교부</p> <p>사. 과태료 부과징수</p>	<p>「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3항</p> <p>같은법 제44조의2 제4항</p> <p>같은법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p> <p>같은법 제76조의3</p> <p>같은법 제77조</p> <p>같은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p> <p>같은법 제98조</p>	